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29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 박지혜·허 영·김성환

이소영 · 김원이 · 이용우

박지원 · 김문수 · 허성무

박해철 · 김남근 · 정일영

박정현 • 이훈기 • 채현일

오기형 • 정진욱 • 김 윤

위성곤 · 김정호 · 이해식

권향엽 • 박희승 • 박선원

장종태 · 김영환 · 황명선

박홍근 • 임광현 • 강준현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해당·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 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1항 중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를 "우대세율적용·탄력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이 법 및 제3조제1항 각호의 법률에 규정된 조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 2.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 4. 탄력세율(「교통・에너지・환경세법」 등 해당 법률에서 정책상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세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 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적용에 대한 분석
- 5.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 하지 아니한 사유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 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 성) ① -----감면 · 비과세 · 소득공제 · 세액 공제 •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 ---우대세율적용·탄력세율적 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용 또는 과세이연 등 이 법 및 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 제3조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 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정된 조세특례-----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 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u><신</u>설> ② 조세지출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 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탄력세율(「교통・에너지・ 환경세법」 등 해당 법률에서

<u>②</u>·<u>③</u> (생 략)

전책상 필요한 경우 법률에 규정된 세율을 대통령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적용에 대한 분석

5.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유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